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86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영업정지처분 면제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래연습장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17조제5호 중 “2014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생략) <u><신설></u>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u>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②·③</u> (생략)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에 따른 음반·음악영 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u>2014년 1</u> <u>월 1일</u>	5. ----- ----- ----- <u>2023년 1</u> <u>월 1일</u>